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2

발의연월일: 2020. 7. 3.

발 의 자: 강병원 · 민병덕 · 김민기

김두관・안민석・기동민

송영길 · 안규백 · 이개호

김홍걸 · 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일부 주택을 예외로 둠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교란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표준 예외를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예외로 두는 내용을 삭제하 여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임(안 제8조제2항).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에 한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생 략)	제8조(과세표준) ① (현행과 같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 <u><</u> 후단 신 설>	음) ②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 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주택,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u>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u>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 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 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
<u>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u>	<u>다.</u> <u><삭 제></u>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 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 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 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 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 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 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분에 한정한다.

③ • ④ (생 략)

<삭 제>

③ • ④ (현행과 같음)